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유



김 창 섭 수의서기관  
농림부 가축방역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은 '02년도 안성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26일 개정·공포되어 금년 6월 27일부터 시행케 되었다.

그동안 예방법은 부분개정 8번, 전문개정 2번, 총 10번에 거쳐 개정되었고 금번 개정은 전문개정으로 가축전염병관리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설립 등 가축전염병방역체계를 확립하고 가축의 거래기록 유지, 질병관리등급 제도 등을 도입하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의무 및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2. 주요 개정내용

### 가. 가축방역자문기관인 가축방역협의회 설치(제4조)

현재 농림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갖는 협의회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99년 7월 까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던 “가축방역대책위원회”는 정부위원회 통폐합계획에 따라 폐지된 후 4년만에 제도가 부활된 것으로, 현재 입안예고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에 협의회의 구성·협의사항·위원의 임기와 직무·회의소집 등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 나.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 명문화, 정부·축산단체가 농가에게 방역교육 실시(제 5조, 제6조)

농가 등에 대한 가축방역 책임을 부과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으로 가축의 소유자 등은 축사 및 그 주변의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정부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도록 하였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에게 농가에

대한 가축 방역 교육실시 의무를 부여하였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교육을 받지 아니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등 법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자율방역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하였다.

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토록 함(제8조)

가축방역사 제도는 과거

“가축방역보조원” 명칭을 “가축방역사”로 명칭만 달리한 것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련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관을 보조하여 방역 업무를 수행도록 하였다.

가축방역사의 자격·업무범위는 시행규칙개정안에서 정하고 있으며, 2년제 대학에서 축산·생물학을 전공하였거나 가축방역행정기관이나 축산관련단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가축방역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동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제9조)**

현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특수법인화하여 민간 방역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예산지원 및 정부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 가축거래기록 및 가축이동시 검사증명서 등 휴대의무화(제16조)**

부도난 농장 또는 과거 전염병이 발생하였던 농장의 가축 유통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현행 가축의 소유자 등에

게 가축의 이동시 검사·주사증명서의 휴대 또는 검사·주사표시 외에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토록 하였다.

거래기록 관련 대상가축·지역·시기·기록의 서식 등 구체적 내용은 농림부 고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농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된다.

**바.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종축장·부화장·비료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동물약품·사료·집유·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를 신설(제17조)**

현재 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가축사료·동물

약품·집유·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소독과 사료공장·집유장·종축장·부화장·가축분뇨 제조업자에 대해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를 계도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독설비 및 실시대상을 확대하고 소독설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소독설비 대상자별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농장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실시 회수와 방법을 정하여 처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출입시마다 소독의무를 부여하였고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장주가 소독을 하되 해당 운전자를 고발토록 하였다.

**사. 농장·마을단위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제18조)**

'96년부터 종돈·종계 사육 농장에 대해 위생·방역관리 인증요령을 고시로 운영하여

왔던 것을 법에 근거를 두고 일반농장과 마을단위까지 확대하여 등급을 정하고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인증제도는 질병 비발생조건을 전제로 절차가 까다롭고 인증을 받더라도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어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였으나 법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시행 규칙에서 농장·마을별 질병 비발생 조건 외에 농장의 소독·환경 및 위생 등 방역관리 상태까지 구분하여 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축종별 축산 관련단체가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 시·도지사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가축외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도 이동제한·출입통제·교통차단 등을 실시(제19조제1항)**

가축전염병 전파위험이 높은 사람·차량 등에 대해 발생지역으로의 교통차단·이동제한·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전염병 발생지역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자. 전염병 발생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월 이내의 사육 제한 명령 규정을 신설(제19조제2항)**

현재 이동제한명령 등 방역 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한해 농장폐쇄나 사육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 법정 가축 전염병중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제1종가축전염병 발생신고를 지연한 농가에 대하여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이동제한 지역의 가축을 수송해 주거나 이를 도축해 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외에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토록 하였다.

**차. 가축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주변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2조)**

현재 가축사체의 소각·매몰기준은 환경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장소, 소각·매몰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나 매몰 등 조치 이후 매몰지 사후 관리에 대해 발굴금지만 정하고 주변 환경오염방지 규정을 정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였다.

매몰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카. 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등을 차등 지급(제48조제3항)**

현재 전염병 발생신고를 늦게 한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던 규정을 보완하여 소독, 이동제한, 검사·주사, 살처분 명령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평가액의 40%까지 차등 지급토록 하였다.

차등지원의 유형별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개정안에 반영하였다.

**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살처분 명**

# 특집

최근 변화되는 양돈업계 제도·법령, 알고 대처하자

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토록 함(제49조)

현재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생계안정비용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급대상·절차·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정함에 있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이동제한 명령 등 방역조치를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파. 국립가축방역기관장(검역원장)이 시·도지사에게 검사·소독·이동제한·살처분·도태·시설 사용정지 등 방역조치 요구를 가능케 함(제53조)

하.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자에 대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

61조~제64조)

개정안은 관계부처·단체·기관의 입안예고중임 **양돈**

현재 휴대검역물의 경우 대부분 검역신고를 하지 않고 그 대상이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 등으로 법적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범칙금 규정을 도입하였다.

휴대검역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5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범칙금 처분이 가능토록 하였고, 이를 납부치 아니할 경우 현행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위반행위별 범칙금의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3. 하위법령 추진사항

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

개정안은 관계부처·단체·기관의 의견조회와 '03. 4.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의중임

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

성별이 나 자신?

### 재미로 보는 만화



<자료 : 부처와 돼지2 - 있는 그대로 좋아>